

2023 신라대학교 대학안전관리계획

2023. 2.

신라대학교

제1편 총칙

제1장 개요 1
제2장 현황 2

제2편 재난안전관리 분야별 계획

제1장 교육시설물 안전관리 계획 9
제2장 연구실 안전환경 개선 계획 15
제3장 자연재해 대비 계획 22
제4장 원자력 사고·재난 대비 계획 29
제5장 대규모 정전 대비·대응 계획 32
제6장 학교 전염병 대비 계획 36
제7장 학생 황사, 미세먼지 및 폭염대비 계획 49
제8장 학교 식중독 사고 대비 계획 54
제9장 학생 인권침해 및 성폭력 예방근절 계획 60
제10장 장애학생 안전 및 인권제고 계획 67
제11장 학생 교외활동 안전교육 계획 74

제3편 부록

제1장 재난상황실 운영 77
제2장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관리현황 78

제1편 | 총칙

제1장 | 개요

1. 법적근거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 22조 및 제23조
- 「고등교육법」 제27조의2

2. 수립목적

- 각종 재난으로부터 학교구성원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재난대비단계와 안전문화 활동, 그 밖에 재난·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3. 집행계획 수립대상

- (자연재난 분야) 풍수해(태풍, 호우, 대설), 지진(해일), 낙뢰, 황사·미세먼지, 폭염
- (사회재난 분야) 화재 및 폭발, 방사능 누출 사고, 감염병
- (안전관리 분야) 교통안전, 학생외부활동, 대학실험실, 교육시설물, 체험활동, 학교·성폭력, 자살예방, 식품안전, 산업재해, 중대재해

제2장 |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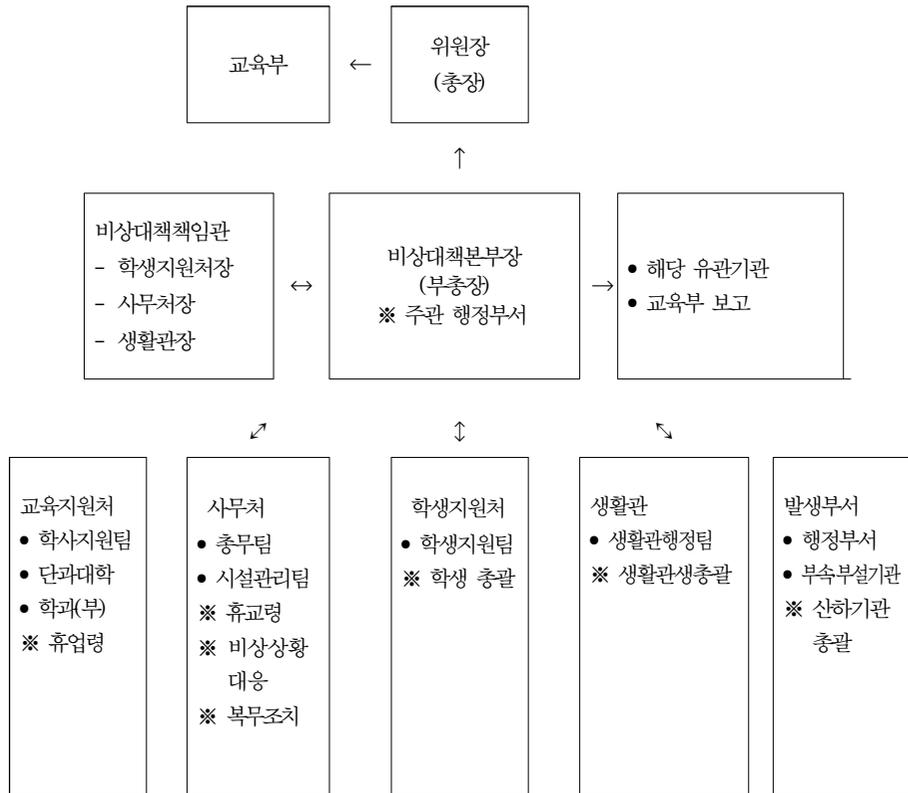
□ 주요임무

- 학교 및 학교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총괄
- 체험위주의 교육·훈련을 통한 위기대응 능력 체화
- 심리적 위기 지원 및 학생건강 보호
- 대학 안전관리 강화

□ 재난안전 유형별 관리주체

업무	상황관리 분야	주관부서	협조·지원부서(기관내)
주관	학교 및 학교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총무팀	시설관리팀 학생지원팀 장애학생지원센터 학생상담센터 전자정보팀
협조 지원 (부처간)	풍수해 (주관기관: 국민안전처)	시설관리팀	총무팀, 학생지원팀
	지진 (주관기관: 국민안전처)	시설관리팀	총무팀, 학생지원팀
	황사/미세먼지 (주관기관: 환경부)	학생지원팀	총무팀, 장애학생지원센터
	폭염	학생지원팀	총무팀, 장애학생지원센터
	화재 및 폭발 (주관기관: 국민안전처)	시설관리팀	총무팀, 학생지원팀
	방사능 누출 사고 (주관기관: 원자력안전위원회)	시설관리팀	총무팀, 학생지원팀
	감염병 (주관기관: 보건복지부)	학생지원팀	총무팀
	산업재해, 중대재해 (주관기관 : 고용노동부)	시설관리팀	총무팀, 시설관리팀, 생활관행정팀

□ 상황보고 체계



○ 학교 안전사고 보고체계 일원화

- 교육부 안전대표 메일(moe119@moe.go.kr)을 통해 안전사고 발생시, 24시간 일관성 있는 보고체계 유지

○ 학교 안전사고 신속 보고체계 가동

- 안전사고 발생 최초보고 시 교육부 보고
 - * 교육부 안전대표 메일로 보고 후 유선연락
- NDMS(국민안전처 재난관리시스템) 피해현황 탑재를 위해 교육청 또는 교육부 상황보고와 함께 기초자치단체(시·군·구)에도 재난상황 통보

※ 관련: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20조-재난상황 보고

교육부로 보고해야 하는 재난·안전 사고

- 교육활동 중 사고: 병원진료를 요하는 증상 이상의 사고
- 교육활동 외 사고: 사망1명 또는 부상5명 이상의 사고
- 학교관련 시설에 대한 화재, 붕괴, 폭발 사고 등
- 학교현장의 폭발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시설피해가 심대한 경우
- 학교현장에서 신종 전염병 최초 발생 및 법정 전염병 집단 발생 시
- 기타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는 사건·사고 및 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재난 발생 시

□ 유형별 관리체계

○ 재난 유형별 대응 기준

구분	시설관리팀 대응	비상대책본부 가동
풍수해	태풍 ○ 태풍주의보 발령 시	○ 심각한 피해 발생 가능 시
	호우 ○ 호우경보	○ 심각한 피해 발생 가능 시
	대설 ○ 대설경보	○ 심각한 피해 발생 가능 시
지진	○ 규모 4.0 ~ 4.9	○ 규모 5.0이상, 피해 발생
지진해일	○ 지진해일주의보	○ 지진해일주의보 발표되고 인명피해가 발생가능성이 있는 경우
화재	○ 초기화재 발생 신고	○ 화재 연소 확산 ○ 인명 피해 가능 시
붕괴	○ 기상청의 자연재해(대설) 등 특보 발령 ○ 학교 및 학교시설에서의 재난(화재, 폭발 등) 발생	○ 다수 인명피해 우려 상황 전개 시
방사능	○ (백색비상) 방사선영향이 원자력시설 건물 내에 국한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상상태	○ (청색비상) 방사선영향이 원자력시설 부지 내에 국한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상상태
전염병	○ 국가에 전염병 초기 발생시	○ 교내 전염병 감염자 발생 시

○ 비상대책본부 구성·운영



구성	주요임무	근무자
지휘부	비상대책본부장 ○ 상황관리전담반 업무 총괄	부총장
	책임관 ○ 학생피해 현황 파악 ○ 상황판단회의 개최 및 지시	학생지원처장
	책임관 ○ 학교 및 학교시설 피해현황 파악 ○ 피해시설 긴급 안전점검 실시 ○ 응급복구 추진상황 관리	사무처장
	책임관 ○ 기숙사 피해 현황 파악 및 지시 ○ 학생안전 관리	생활관장

□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분장

구 분	업무 내용	담당부서	관련근거
국가 재난관리 총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관리·운영 국가안전관리 집행계획 수립 총괄 재난관리체계 구축 및 사태 발생 시 교내 재난 관리 총괄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 학생 안전교육 기본정책 수립·시행 위기대응 표준 및 실무매뉴얼 관리·운영 총괄 정부연습, 안전한국훈련 실시 주관 재난 및 안전관리분야 정부업무 평가 담당 	총무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 (대통령 훈령342호),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전통적 안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북한군 침투·도발 위기 대응 업무 일반 테러 위기 대응 업무 	총무팀	교육부 총무 3200
학생 건강 · 안전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보건·급식·환경질환 예방대책 수립 학교 식중독 사고 예방대책 학교 감염병 및 만성질환 예방대책 감염병실무대응매뉴얼 관리 재난 및 안전사고 관련 심리적 위기지원 	학생지원팀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폭력(성폭력 포함) 예방 종합대책 학교폭력근절 및 안전한 학교를 위한 학생 보호 대책 수립 학교폭력 대응 매뉴얼 개발·보급 	학생지원팀 학생상담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치원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 강화 유치원 시설안전관리 강화 유치원 급식·안전관련 제도개선 및 관리 체계 강화 	신라대어린이집	유아교육법
시설 안전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설 분야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및 집행 계획 수립 교육시설 안전관리 총괄 교육시설물 안전점검 및 복구 교육시설물 재해·재난, 화재안전 분야 관리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지정 및 관리 실무대응매뉴얼 관리 (다중밀집 대형화재 및 건축물 붕괴 등) 실험실안전 	시설관리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자연재해대책법, 지진재해대책법,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업재해 예방·대응 및 배발방지 대책 수립 중대재해 예방·대응 및 배발방지 대책 수립 	시설관리팀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기 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이버 안전 관리(사이버안전매뉴얼) 	전자정보팀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5. 추진방향

비전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학교생활 구현**

목표 **더 안전한 학교를 위한 지속적 예방과 환경 조성**



추진 전략 **1 학교 안전사고 예방체제 구축**

2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 강화

3 학교구성원의 예방능력 강화

4 안전한 교육활동 여건 조성

5 안전한 학교풍토 조성

제2편 | 재난안전관리 분야별 계획

제1장 | 교육시설물 안전관리 계획

1. 개요

가. 안전관리 목표

구성원 모두가 즐겁게 교육과 연구 활동에 전념할 수 있고 최고의 캠퍼스가 되도록 교육시설물의 사전점검 및 관리 및 보수를 통하여 구조적인 결함을 사전에 방지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쾌적한 캠퍼스 조성

2. 학교 시설물 현황

- 총 19개동, 연면적 145,802.21m²

※ 2023년 2월말 기준

구분	총보유수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이상 20년미만	20년이상
합계	19	1	2	7	9
비율	100%	5.26%	10.52%	36.84%	47.36%

3. 안전점검 대상

가. 우리 학교에서 관리하는 모든 시설물

나. 액화석유가스(LPG) 사용시설

다. 소방시설

라. 전기시설 및 승강기 설비

4. 추진계획

가. 건축물 안전관리

○ 10년 이상의 노후 건축물의 안전점검

- 각 구역별로 담당자를 선임하여 책임 관리하고, 사전에 이상 징후를 포착하여 조치

- 점검시기 : 기상 및 계절변화에 따라 수시 점검

○ 신·증축 공사장 안전계획

- 시공업체로 하여금 기상특보 발령에 따라 재해 방지책 지시

- 공사 주변 위험요소 사전제거 및 출입 통제 강화

- 공사현장마다 안전관리자를 시공업체 별 선임하여 책임관리

- 공사현장 주변의 교직원 및 학생들에게 안전사항 공지하여 사고방지

○ 자체 건물 안전점검

- 건물관리주체인 각 단과대학 또는 행정실 별로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결과사항 통보

- 점검시기 : 반기에 1회 이상

나. 액화석유가스(LPG) 사용시설 안전관리

○ 액화석유가스(LPG) 사용시설 현황

구분	설치장소	설치 개소	비고
액화석유 가스 (LPG)	미술관(2), 국제교육관(2), 의생 명관(2), 글로벌타운(1), 제3기숙 사(1), 화랑관(1)	9	실험실습실 및 일반영업용

○ 액화석유가스(LPG) 사용시설 정기점검

- 관련법규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 점검시기 : 매년 4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의한 점검
- 점검장소 :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9개소
- 가스사고 배상책임 보험 가입
- 관련법규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법
- 가입시기 : 매년 3월 보험가입(일반영업용은 별도 가입)

다. 소방시설 안전관리

- 소방계획서 수립
- 관련법규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
- 시행시기 : 매년 12월 말까지 차기년도 계획 수립
- 소방안전교육·훈련
- 관련법규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
- 교육훈련 계획

순번	시행 시기	교육·훈련 명	교육 대상
1	6월	자체 소방훈련	교직원
2	11월	동절기 대비 소방안전훈련	교직원

- 자체점검 및 종합정밀점검
- 관련법규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
- 점검계획 : 매월1회 소방시설 자체점검 실시
- 년 중 1회 소방시설 종합점검 및 작동점검 실시 (결과보고서 소방서 제출)

- 소방방재실 운영
- 관련법규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
- 운영방법
- ※ 소방실 인력에 의한 전 교내 소방시설 자체점검 및 유지보수
- ※ 수신기 작동 시 방재실 감시인력 및 상황실 24시간 출동대기
- 건물 화재보험
- 관련법규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가입시기 : 매년 12월 말까지 보험가입

라. 전기시설 안전관리 계획

- 전기시설 정기검사
- 관련법규 : 전기사업법 제65조
- 점검시기 : 매3년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의한 점검
- 점검장소 : 인입 수·변전실
- 자가용전기설비 안전점검 실시
- 관련법규 : 전기안전관리규정(자체)
- 점검시기 : 월1회 전기안전관리자에 의한 점검
- 점검장소 : 전 건물 변전실

마. 승강기 안전관리 계획

- 엘리베이터 및 덤웨이터 설치현황

구 분	설치장소	수량	비고
엘리베이터	미술관(1), 국제교육관(1), 인문관(2), 사범관(1), 예음관(1), 중앙도서관(1), 상경관(1), 공학관(2), 백양생활관(3), 미래항공융합관(1), 의생명2관(1), 화랑관(1), 의생명관(1), 글로벌타운(3), 글로벌타운C동(1), 종합강의동(2)	23	
덤웨이터	중앙도서관(2), 백양생활관(1), 어린이집(1)	4	중앙도서관, 백양생활관 사용안함

- 정기검사
 - 관련법규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3조
 - 점검시기 : 매년 1회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에 의한 검사
 - 검사장소 : 본관 외 15개동 (23대)
- 자체점검
 - 관련법규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7조
 - 점검시기 : 매월 1회 자체점검 실시
 - 점검장소 : 본관 외 15개동 (23대)
-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
 - 관련법규 :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0조
 - 가입시기 : 매년 3월 가입(26대) - 미사용 승강기도 보험대상

바. 대학 계절별 안전관리 계획

- 봄
 - 해빙기 대비 재난 취약시설 안전점검
 - ※ 축대, 옹벽, 담장 등의 시설 상황 확인
 - ※ 얼거나 눈에 묻혀 있던 옥내·외 전기시설의 점검 철저
 - ※ 도로의 침강, 파손 등을 정밀점검하고, 안전조치를 강구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
- 여름

- 여름철 풍수해 대비 취약지역 안점점검
 - ※ 상습침수, 노후시설, 붕괴 위험 등이 있는 시설은 특별관리 및 관리대장을 작성, 주기적인 점검 및 보고
 - ※ 옹벽·축대, 배수로, 건물의 옥상바닥 등 평소관리에 소홀한 부분 점검
- 가을
 - 동절기 대비 각종 시설망(가스, 물, 전기) 정비
- 겨울
 - 대설피해 최소화 방안 구축
 - 난방기구 사용증가에 따른 화재예방
 - 결빙 지역 교통 및 안전사고 예방활동

5. 추진일정

사업내용	추진일정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건축물 안전점검												
LPG사용시설 정기점검												
소방시설 자체점검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												
전기시설 안전점검												
승강기 자체검사												
승강기 정기검사												
계절별 안전점검												

제2장 연구실 안전환경 개선 계획

1. 개요

가. 우리대학에 설치된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의 안전을 확보하여 연구실 활동 종사자를 보호하고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안전한 연구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2. 재난관리체계 (조직도)

위원장(부총장)
당연직 위원(14명)
교육지원처장 사무처장 학생지원처장 일반대학원장 보건복지대학장 항공대학장 공과대학장 MICT융합공과대학장 디자인대학장 토양분석센터장 공동기기실장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3. 현황 및 실태

가. 관리대상 연구실 현황

연 번	기 관 명	합 계
1	보건복지대학	57
2	공과대학	40
3	MICT융합공과대학	45
4	디자인대학	54
5	사범대학	4
6	항공대학	13
7	산학협력단	7
8	부속기관	2
합 계		222

나. 추진 목표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에 규정된 각 사항들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부산·경남지역의 대학 환경안전분야 선도적 역할 수행하고자 함

4. 주요내용

가. 연구실 안전교육 강화 및 안전문화의 확산

- 연구실 안전교육 실시 확대 및 안전문화 캠페인 실시

나. 정기·자체점검 강화 및 일상안전점검 정착 유도

- 정기·자체점검 강화 및 연구실별 안전관리담당자의 일상안전 점검 내실화

다. 연구실 환경개선 사업 실시

- 정부의 연구실 환경개선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연구실 안전 취

약 부분의 환경을 개선코자 함.

- 연구실 안전환경 개선 대상 조사 및 정부지원금 조달 계획 수립

- 연구실 내 위험물 관리를 위한 안전캐비닛 설치
- 연구실 내 유해·위험물 전용 밀폐형 시약장 설치

라. 연구실 안전사고 피해보상 대비 상해보험 가입

- 연구실에서 발생될 수 있는 사고로 인한 피해 보상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연구활동종사자 상해보험 가입
 - 연구실활동종사자 가입 대상 조사 및 가입 현황의 게시

마. 연구활동 종사자 건강검진(일반·특수) 실시

- 특수검진 대상 183종 유해인자 취급자에 대하여 개인별로 취급하는 물질에 해당되는 일반 및 특수 건강검진 실시

바. 대학 안전관리 현황 정보공시

- 대학 시설 및 실험실 안전관리 현황 등을 “대학 알리미”에 공시

5. 추진계획

가. 연구실 안전교육 강화 및 안전문화의 확산

- 연구실 안전교육 계획

일 정	내 용	비고
3 ~6월	1학기 연구실 안전교육	
9~12월	2학기 연구실 안전교육	

-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활동 계획

일 정	내 용	비고
5월	연구실 안전점검의 날 행사	
11월	연구실 안전점검의 날 행사	

나. 정기·자체점검 강화 및 일상안전점검 정착 유도

- 일상안전점검 정착 유도 계획

- 일상안전점검시 연구활동종사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일상안전점검의 중요성을 강조 함

다. 연구실 환경개선 사업 실시

- 연구실 환경개선 사업 실시 계획

- 연구실 안전환경 개선지원사업(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 정	내 용	비고
3월~4월	연구실 안전환경 개선대상 조사	
6월~7월	연구실 안전환경 개선 정부지원금 신청	
9월~12월	연구실 안전환경 개선사업 실시	

라. 연구실 안전사고 피해보상 대비 상해보험 가입

- 연구활동종사자 상해보험 가입 계획

일 정	내 용	비고
11월	보험가입대상 연구활동종사자 조사	
12월	연구활동종사자 보험가입	

마. 유해·위험물 취급 연구실 정기점검 실시

- 유해·위험물질 취급 연구실 정기점검 실시

일 정	내 용	비 고
1월	연구실 정기점검 실시	
7월	연구실 정기점검 실시	

바. 연구활동 종사자 건강검진(일반·특수) 실시

○ 연구활동종사자 건강검진(일반·특수) 실시계획

일 정	내 용	비 고
3월	연구활동종사자 건강검진 대상 선정	
4월	연구활동종사자 건강검진 실시	
9월	연구활동종사자 건강검진 대상 선정	
10월	연구활동종사자 건강검진 실시	

사. 대학 안전관리 현황 정보공시

○ 대학 시설 및 실험실 안전관리 현황 등을 “대학 알리미”에 공시

일 정	내 용	비 고
8월	대학 시설 및 실험실 안전관리 현황 자료 제출 - 교육시설재난공제회	
10월	대학 알리미 공시	

안전점검의 날 행사 계획

○ 행사 계획

일 자	구 분	주관부서
06월 07일	교육시설물 안전 대비 안전점검의 날	시설운영팀
10월 04일	교육시설물 안전 대비 안전점검의 날	시설운영팀
12월 05일	교육시설물 안전 대비 안전점검의 날	시설운영팀

< 여름철 풍수해 대비 예방점검 >

1. 행사개요

가. 일 시 : 2022년 6월 7일

나. 참석 대상 : 교직원 및 학생

2. 주요 행사 내용

가. 여름철 풍수해 대비 취약지역 안점점검

나. 여름철 교육 시설 재난관리 대비 공문 발송 및 결과 사항 통보
- 각종 여름철 재난 (태풍·호우·강풍)으로부터 각 급 학교 및 교육 지원시설의 피해예방을 위한 대비/대응활동

3. 기대 효과

가. 학내 구성원들이 학교 내 풍수해 취약지역을 함께 점검해 봄으로써 위험취약지역을 인식하고 개선활동 실시

나. 여름철 각종 재난으로부터 인적·물적 피해를 최소화

< 건축물 정기점검 및 자체안전점검 >

1. 행사개요

- 가. 일 시 : 2022년 10월 4일
- 나. 참석 대상 : 교직원 및 학생

2. 주요 행사 내용

- 가. 교내 전 건물을 대상으로 육안으로 안전점검
- 나. 자체 안전점검 취지 및 내용소개
- 다. 교육자료 공문 발송 및 결과사항 통보

3. 기대 효과

- 가. 학교 내 전 건물을 대상으로 육안으로 안전사항을 점검해 봄으로써 학내 전 구성원들의 건물에 대한 안전의식 고취
- 나. 건물관리주체인 각 단과대학 행정실이 자체 안전점검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를 시설팀에 송부 할 수 있도록 함

< 동절기 대비 소방안전 훈련 및 교육 >

1. 행사개요

- 가. 일 시 : 2022년 12월 5일
- 나. 참석 대상 : 교직원 및 학생

2. 주요 행사 내용

- 가. 화재예방 동영상 자료 시청
- 나. 화재사고 사례 설명 및 사고 시 대처요령 교육
- 다. 분말소화기 및 옥내소화전 사용 훈련

3. 기대 효과

- 가. 화재사고 예방
- 나. 화재사고 시 신속한 초기대응으로 피해 최소화

제3장 자연재해 대비 계획

1. 개 요

가. 풍수해(태풍, 호우, 대설, 지진) 등으로 인한 자연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대응·복구대책을 마련하여 신속한 대응으로 대학의 재산과 인명 피해를 최소화

2. 현황 및 실태

가. 자연재해대비 위기대응

- 풍수해 및 지진 등 자연재해 대비하여 담당부서별 업무지정 및 임무습득 한다.

나. 대설 대비 위기대응

- 대설 대비 담당부서별 업무지정 및 임무습득 한다.

구 분	점 검 내 용	담당부서	비 고
풍수해 및 지진	건물옥상 배수구 점검	시설운영팀(건축)	999-5394
	붕괴 위험시설 점검	시설운영팀(부대시설)	999-5393
	외부조형물 및 조경수 고정상태 점검	시설운영팀(부대시설)	999-5393
	건물 누수상태 및 시설물 점검	시설운영팀(건축)	999-5394
	소방시설 및 비상발전기 점검	시설운영팀(전기)	999-5093
	배수펌프 점검	시설운영팀(설비)	999-5124
대 설	제설차량(2대) 운행	시설운영팀(부대시설)	999-5393
	제설작업	총무팀	999-5820

3. 주요조치 계획

가. 예방 및 대비 대책

- 자연재해 대비·대책 마련
 - 철저한 사전 점검과 예방으로 인명·대학 재산 피해 최소화
 - 재난취약시설의 점검·정비 강화
- 신속한 응급대책 마련
 - 재난관리집행계획에 따른 비상연락망[별지 #1] 참조 구축
 - 구성원들의 비상소집체제 정비
 - ※ 비상근무자의 임무 및 비상 근무요령 숙지 : [별지 #2] 참조
 - 재난상황 발생 시 신속한 자체 대응을 위한 표준대응절차 수립과 시설물의 응급복구체계 확립
- 재난취약시설 특별관리
 - 상습침수, 노후시설, 붕괴 위험 등이 있는 시설은 특별관리
 - ※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월 1회 이상 안전점검
- 방재 물자 비축 관리 및 재해 대책비 확보
 - 재해대책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재해대책비(비축물자비, 유지보수비 등) 우선확보 조치
- 재해예방 훈련 실시
 - 가상 풍수해 대비 비상훈련 실시 : 민방위훈련과 연계
 - 비상근무체제에 따른 직원의 비상소집, 재난대책본부 설치 운영
 - 분야별 업무지정 및 임무습득

나. 대응대책

○ 재난보고 및 초동대응태세 확립

- 재난발생 발견자 및 시설물 관리책임자 → 담당부서(팀장, 부서장) → 유관기관(소방서, 경찰서 신고 및 협조 요청) → 교육부(재해대책반, 중앙사고수습본부)
- 긴급상황 발생시 즉시 보고, 적시 지원 및 대처
- 자연재해 발생 시 교직원 당직근무 실시 명령 발령

○ 학생 안전 보호조치

- 자연재해로 인한 재난예견 또는 발생 시 기상상황을 감안, 지역실정과 총장의 판단에 따라 학생 보호조치

- 관심단계 : 휴강 조치
- 주의단계 : 휴강 조치 및 위험예상지역 학생 안전시설에 수용
- 경계경보 : 휴강 조치 및 안전시설에 수용
- 심각경보 : 임시휴강 및 휴교 조치

※ 위기경보 수준

구분	판단 기준	비고
관심 (Blue)	· 징후가 있으나 그 활동수준이 낮아서 가까운 기간 내에 국가 위기로 발전할 가능성이 비교적 적은 상태	· 징후 감시활동
주의 (Yellow)	· 징후 활동이 비교적 활발하고 국가위기로 발전할 수 있는 일정 수준의 경향성이 나타나는 상태	· 협조체제 가동
경계 (Orange)	· 징후 활동이 활발하고 전개속도, 경향성 등이 현저하여 국가위기로 발전할 가능성이 농후한 상태	· 대비계획 점검
심각 (Red)	· 징후 활동이 매우 활발하고 전개속도, 경향성 등이 심각하여 국가위기 발생이 확실시되는 상태	· 즉각 대응태세 돌입

- 응급구조·수습대책 추진
 - 재난상황에 따라 신속하게 학생들을 대피시키고, 긴급구조통제단 등에 구조요청
 - 인근병원 응급의료 인력 지원 요청

- 피해시설 복구·정비 소요예산을 예산부서와 협의하여 확보
 - ※ 관련보험 가입(교육시설재난공제회)으로 인적·물적 피해를 보상

다. 복구대책

- 시설 및 인력지원
 - 유휴 대학시설을 이용 이재민 수용소 설치·운영
 - 피해 발생정도에 따라 복구 인력 지원
- 재난피해 배상(보상) 대책 수립
 - 피해상황에 따른 신속한 보상체계 구축
 - ※ 합동조사단에서 조사한 재난 발생원인, 피해상황, 책임소재 등을 기초로 하여 재난피해 배상(보상)액 확정
 - 피해자 대표와 보상 협의 추진
 - ※ 피해자 대표와 배상(보상)액, 배상(보상)절차, 배상(보상)기한 및 기타 사항에 관하여 협의
 - ※ 배상(보상)금 지급·정산 : 책임자를 규명 중대과실이 있는 경우 구상권 행사
- 피해시설에 대한 복구 및 정비대책 수립
 - 신속한 복구의사 결정 및 피해 재발 방지 대책 수립
 - 총장은 소관시설·업무에서 재난발생시 피해원인 등을 조사·분석하여 유사사고 방지·예방대책과 소관시설에 대한 복구 계획을 수립·시행

4. 추진일정

사업내용	추진일정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재난취약시설 특별점검												
방재 물자 점검												
재해예방 훈련 실시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비상연락망

부서명	상황실		비고
	전화번호	F A X	
총무팀	051)999-5220	051)999-5800	
시설운영팀	051)999-5094	051)999-5113	
학생지원팀	051)999-5227	051)999-5655	
학생지원팀 (의료지원실)	051)999-5326	051)999-5655	
어린이집	051)999-5159	051)999-5160	
방호상황실(에스원)	051)999-5384		외주업체
전자정보팀	051)999-5770	051)999-5073	

비상근무자의 임무 및 근무요령

구분	임무 및 근무요령
1단계 (주의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근무내용과 연계하여 관련 부서(팀장)에 기상특보 통보 상황근무 및 사전재해 예방조치 지시, 확인 및 대처요령 전파·지시
2·3단계 (경계·심각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해상황 파악 집계 및 보고서 작성 긴급대처요령 및 응급복구 방법 지시 기타 재해상황 전반을 관리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고체계 : 담당자 → 팀장 → 처장 → (부총장) → 총장 ※ 긴급상황시 : 담당자 → 총장, 처장, 팀장에게 즉시 보고 근무지 : 해당부서 사무실 비상근무체제로 변경 시 전일 근무조의 다음 조부터 순차적으로 근무 근무교대 요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일 : 08:30~09:00까지는 업무 인수·인계 - 휴일 : 09:00~18:00, 18:00~익일 09:00 교대 근무 ※ 08:00~09:00까지는 업무 인수·인계 및 상황파악 등을 위하여 근무자 전원 합동근무 실시 근무자는 전일 근무자로부터 인수한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근무 중 변화되는 상황을 즉시 파악·보고 등 신속한 대응 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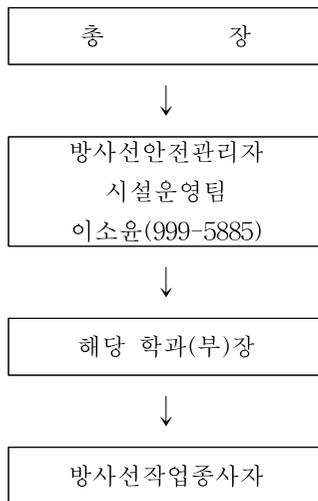
제4장 원자력 사고·재난 대비 계획

1. 개요

가. 최근 우리나라의 원자력 및 방사선분야는 날로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으며 방사선의 응용에 있어서도 학술분야 연구를 비롯 각종산업에 있어서 그 수요가 날로 증가하여 이에 부응하는 방사선의 안전성에 특별히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나. 본 대학은 산업기술의 발달로 인한 방사성동위원소의 연구·개발, 생산·이용과 이에 따른 안전관리를 위하여 방사선 취급전문인을 양성에 힘쓸 뿐만 아니라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2. 재난관리체계 (조직도)



3. 현황 및 실태

가. 방사선의 종류 및 특성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장소가 정해져 있으며 사용하는 방사선의 종류에 따라 불의의 방사선사고 발생 시 사고대응매뉴얼 마련

목 적	장 소
밀봉방사성동위원소 사용장소	토양분석센터 (공학관 310-1호)
	공동기기실 (의생명관 501호)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장소	X선회절분석실 (공학관 901-2호)
	X선회절분석실 (공학관 806-1호)
	구강방사선 실습실 (의생명2관 202호)

나.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를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교육을 실시

4. 주요내용

가. 방사선 관리구역 안전관리

- 방사선발생장치 일일점검
- 방사선측정기 검·교정
- RG 및 X선 회절분석장치 방사선량률 측정
- 방사선발생장치 관리현황보고

나.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 안전관리

- 기본교육 및 직장교육 실시
- 방사선작업종사자 피폭관리
- 개인피폭방사선량측정 용역 재계약
- 방사선작업종사자 건강검진 실시

5. 추진 일정

가. 방사선 관리구역 안전관리

사업내용	추진일정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일일점검												
방사선측정기 검·교정												
방사선량률 측정												
방사선발생장치 관리현황보고												

나. 방사선작업종사자 안전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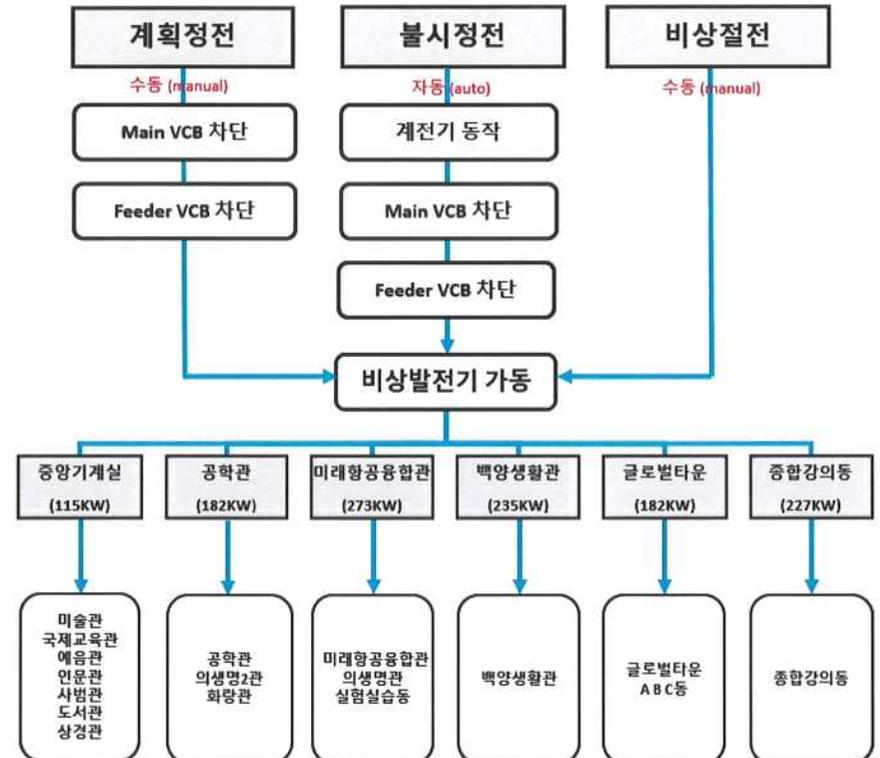
사업내용	추진일정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기본교육 및 직장교육												
방사선작업종사자 피폭관리												
개인피폭방사선량측정 용역계약												
방사선작업종사자 건강검진 실시												

제5장 대규모 정전 대비·대응 계획

1. 개요

국가 전력공급 예비력 부족에 따른 불시 정전 및 한전 전력계통의 천재지변에 의한 각종 사고, 자체 수·변전설비의 노후 및 개·보수시에 발생할 수 있는 정전에 대비하여 우리대학교의 자체 정전대비 대응 매뉴얼을 작성하여 비상시 원활하게 대처할 수 있는 응급조치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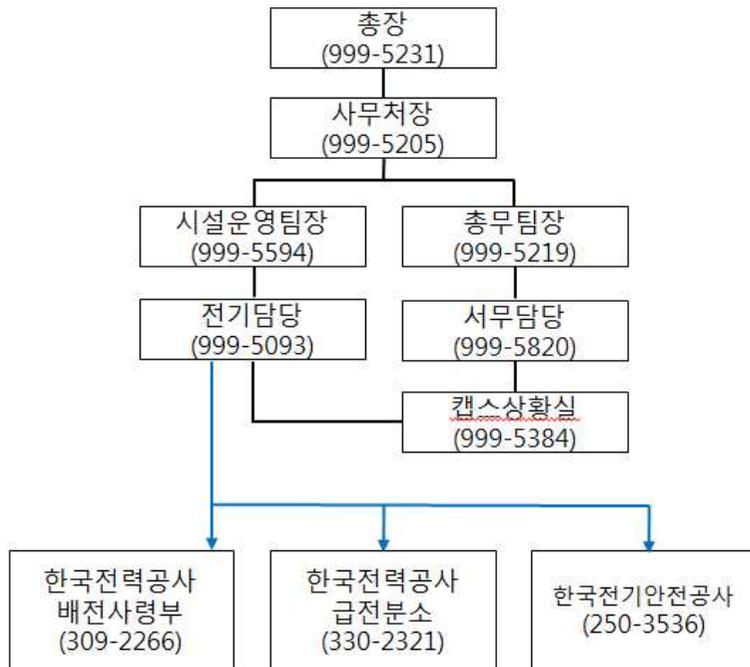
2. 정전 발생시 흐름도



3. 비상발전기 시설현황

설치장소	중앙기계실	공학관	미래항공 융합관	백양생활관	글로벌타운	종합강의동
용량	115kW	182kW	273kW	235kW	182kW	227kW
합계	6대, 1214kW					

4. 비상연락체계도



5. 주요내용

가. 비상발전기 용도

- 소방법에 의한 비상전원 공급
- 소방펌프, 승강기, 비상전원

나. 상황에 따른 업무체계

- 불시정전 발생시
 - 캡스 상황실에서 정전 여부를 전기 담당자에게 통보한다.
 - 전기 담당자는 상황을 확인하고, 비상발전기의 가동을 확인 후 비상전원의 정상 공급을 확인한다.
(자동으로 가동 실패시 수동으로 가동할 것)
 - 승강기에 갇힌 인원이 없는 지 인터폰 및 자동통화장치를 이용하여 확인한다.
 - 한국전력공사의 배전사령부 또는 급전분소에 정전 및 복전 등의 진행상황을 정확히 파악한다.
 - 비상연락체계에 의하여 보고한다.
- 계획정전 발생시
 - 계획정전은 수리 및 개·보수를 위하여 시행하며, 비상발전기는 가동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 부득이 비상전원의 공급이 필요할 때에는 비상발전기를 수동운전으로 가동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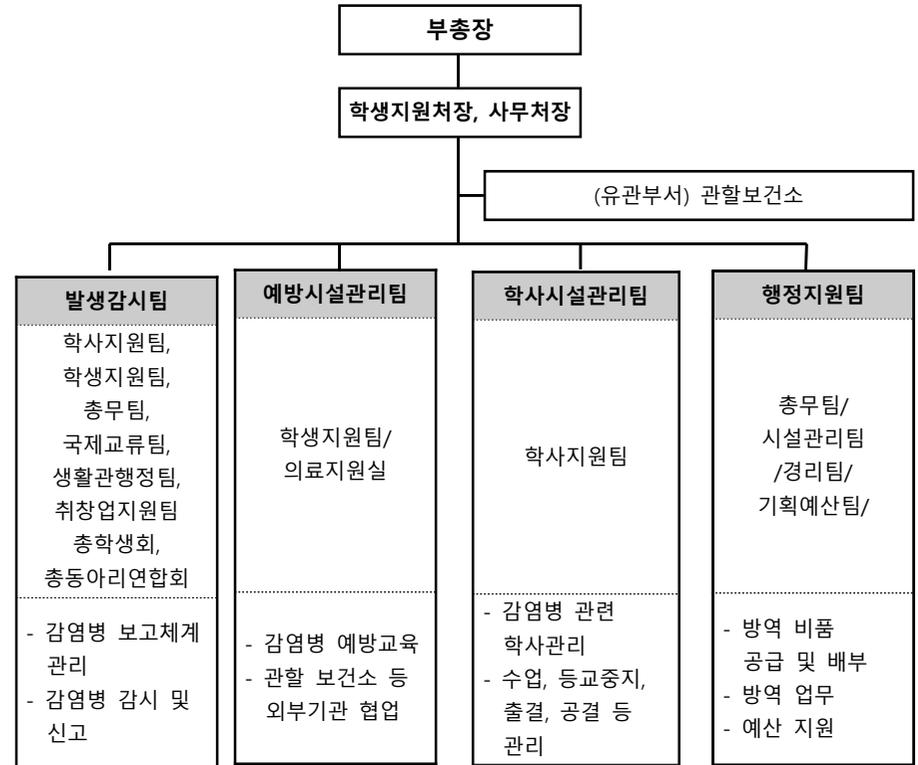
○ 비상절전 발생시

- 냉난방부하를 우선적으로 차단하여 국가에너지 비상수급에 동참한다.
- 설치 사용중인 에너지저장장치를 우선 공급하여 피크 부하 절감 및 전력사용량 절감에 참여한다.
- 부하의 긴급절약이 필요할 시에는 비상발전기를 수동 가동하여 비상전원을 공급한다.

제6장 학교 전염병 대비 계획(코로나19 등)

1. 비상조직체계

가. 비상조직 체계도



나. 비상조직 체계 구성

구분	보직	직위	비고
일상회복 지원단	감염병관리위원장	부총장	최고의사결정 기구
	감염병관리위원회	사무처장, 교육지원처장, 학생지원처장, 재무처장, 기획조정처장, 입학관리처장, 국제교류처장, 대학원장, 인재개발처장, 대외협력실장, 도서관장, 생활관장, 학생위원 2명(총학생회장·부회장)	
일상회복 지원단 관리조직	감염병 총괄관리자	사무처장	부 학생지원처장
	감염병 발생 감시 담당자	학생지원팀장	(의료지원실 5326) 지원
	발생감시 관리자(대학)	단과대학장	
	발생감시 관리자(대학원)	대학원장	대학원 교학팀장
	발생감시 관리자(교원)	교육지원처장	
	발생감시 관리자(교직원)	총무팀장	
	발생감시 관리자 (외국인 학생)	국제교류팀장	
	발생감시 관리자 (내국인 학생)	학생지원팀	
	발생감시 관리자(기숙사생)	생활관 행정팀장	
	발생감시 관리자	학사지원팀장	
	발생감시 관리자	취창업지원팀장	
	발생감시 관리자	입학관리팀장	
	발생감시 관리자	학술정보팀장	
	모니터링 요원	각 학과(부), 대학원 전체 부서 행정담당자	(총학생회장, 동아리연합회 회장 지원)

2. 현황 및 계획

□ 위험요인

- (코로나-19) 2019년 중국 우한에서 발생하여 전 세계로 확산된 새로운 유형의 코로나바이러스에 의해 비말, 호흡기, 눈·코·입 접촉 침투로 전염되는 호흡기 감염질환
 - 코로나-19 확진자 증대, 변이 바이러스 출현 등 감염병 상황 장기화로 인한 원격수업 및 비대면 교육으로 학습·정서적 결손발생 및 지역 간·계층 간 학습격차 심화

□ 피해현황 <2023.2. 기준>

▶ 학생(내국인) 신고자 수 (공인출석 신청자 자료기준)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기타
감염신고자 수	무	6	938	2940	집계중	
인명피해(사망)	무					

▶ 학생(외국인) 신고자 수 (외국인유학생 신고 자료기준)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기타
감염신고자 수	무	담당자변경으로 파악불가			집계중	
인명피해(사망)	무					

▶ 교직원 신고자 수 (채택근무 및 병가신청자 기준)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기타
감염신고자 수	0	0	8	136	29 +@	
인명피해(사망)	무					

▶ 교수 및 조교 (병가 또는 채택근무 신고 자료기준)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기타
감염신고자 수	무	타 질병과 정확한 분류 파악불가				
인명피해(사망)	정확한 파악 안됨					

▶ 그 외 기타 (산학협력 등)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기타
감염신고자 수	무	무	정확한 숫자인원 수 파악불가			
인명피해(사망)	정확한 파악 안됨					

▶ 의료지원실로 신고 기준 (전체 문의 및 현황보고 신고기준)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기타
감염신고자 수	X	7	약 256	1074	학과부서 통합관리 중	
인명피해(사망)	0					

□ **원인분석** ※ 피해현황에 대한 면밀한 원인분석으로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

- **질병관리청, 사상구보건소, 사상구청, 부산시 지자체 조사 결과**
 - 교내 학생, 교직원의 코로나-19 감염은 지역사회 전체 증대 추세나, 감염원인은 해외입국과 밀집시설 이용으로 코로나-19 유증상자 행동수칙 교육·관리 강화 및 자율방역 및 유증상자 마스크 착용 권고 홍보 필요

□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 **(비대면 교육)** 코로나19의 방역 변동에 따라 자율방역 홍보 및 유증상자 대학의 각종 활동(수업·행사·자치활동·운동부 훈련 등)은 가급적 비대면 방식을 활용하거나 연기를 원칙으로 학사 운영
- **(대면 교육)** 감염병 예방교육 강화, 환경 위생관리 및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감염 예방을 철저히 하고, 유증상자 조기 발견·조치 등 대학 내 코로나-19 감염 전파·확산을 방지
 - ※ 관련 메뉴얼 : 대학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교육부, 2021)

▣ **비상상황 시 BCP 발동 계획**

1) BCP(Business Continuity Plan) 발동 방안

발동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 대학 『일상회복지원단』의 논의를 거쳐 BCP 단계(1~2단계) 결정 • BCP 단계 결정 시 전체 방역상황 및 학내 감염상황을 고려하여 결정 • 발동 시점 및 기간, 비상대응계획 주요 내용 등을 결정하여 공지
공지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털사이트(portal.silla.ac.kr) 게시판, 신라대학교 홈페이지 학사공지 게시
후속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면 수업 및 업무 복귀 시점을 사전 1주 전에 안내 → 학사운영에 대한 예측가능성 제고

2) 우리 대학 BCP 발동 계획



- 1) 주 출입구 1개를 지정 후 나머지 출입구에 대해서는 봉쇄 조치
- 2) 봉쇄 현황을 신라대학교 홈페이지 → 학사공지에 업로드
- 3) 카카오톡 메시지를 교직원/재학생에게 전송

▣ **업무대체인력**

1) 단과대학별 대체 인력 지정 현황

연번	단과대학	책임 인력1	책임 인력2
1	항공대학	항공운항학과 조교	항공정비학과 조교
2	사범대학	교육학과 조교	유아교육과 조교
3	보건복지대학	사회복지학과 조교	상담심리복지학과 조교
4	인문·상경 대학	경찰행정학과 조교	문헌정보학과 조교
5	디자인대학	시각디자인학전공 조교	산업디자인전공 조교
6	공과대학	건축공학전공 조교	실내건축디자인전공 조교
7	MICT융합공과대학	컴퓨터공학전공 조교	자동차기계공학과 조교
8	독립학과	미래융합학과 조교(1)	미래융합학과 조교(2)
9	계약학부	기업경영학과 조교	뷰티비즈니스학과 조교
10	대학원	일반대학원 교학팀 조교	사회복지대학원 교학팀 조교

2) 각 부서별 대체 인력 지정 현황

연번	부서	책임인력 1	책임인력 2
1	사무처	총무팀장	관리팀장
2	교육지원처	학사지원팀장	학사지원팀 직원
3	학생지원처	학생지원팀장	학생지원팀 직원
4	재무처	경리팀장	경리팀 직원
5	기획조정처	기획평가팀장	기획예산팀장
6	입학관리처	입학관리팀장	입학관리팀 직원
7	국제교류처	국제교류팀장	국제교류팀 직원
8	인재개발처	취창업지원팀장	취창업지원팀 직원
9	대외협력실	대외협력팀장	대외협력팀 직원
10	재정지원사업총괄본부	대학혁신지원사업단 행정팀장	대학혁신지원사업단 직원
11	산학협력단	산학협력단 행정팀장	산학협력단 직원

▣ 유관기관 연락처

사상구청	사상구 보건소	사상구 보건소	북부소방서	선별진료소
안전총괄과	감염예방과	자가격리관리		좋은삼선병원
051-310-4635	051-310-4822	051-310-4918	051-302-0119	051-922-5998

▣ 대학관련 방역지침 공유 방법

- 가. 신라대학교 홈페이지 → 공지사항 → 학사공지
- 나. 신라대학교 포털 → 게시판
- 다. 교직원/재학생 카카오톡 SMS 발송

□ 예산투자 현황 및 계획

대책명	연도별 예산집행 및 2023년계획				비고
	2020	2021	2022	2023 예상	
대학혁신지원사업 코로나19 방역 (소독 및 물품구입비)	126,390,280	88,694,910	32,560,700	10,000,000	
대학혁신지원사업 코로나19 인건비	31,208,900	22,016,670	7,213,710	0	
계	157,599,180	90,886,580	39,797,710	10,000,000	

붙임1 업무연속성계획 점검표

주요 내용		완료	진행	미시
비상조직체계 정비				
1	비상시 즉시 가동할 비상조직체계를 구성하였는가?			
2	비상조직을 구성하는 대응팀과 구성원들의 역할과 임무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가?			
핵심기능 및 가용자원 파악				
3	비상계획 발동 시 대면 진행 수업 및 비대면 전환 수업을 사전에 지정하고, 학내에 공유하였는가?			
4	비상계획 단계별 개방/폐쇄할 건물 및 출입통제 대상을 설정하고 학내에 공유하였는가?			
5	필수 기능 유지를 위한 핵심 업무를 파악하고, 핵심인력 및 조직의 리더 부재 시 대응계획을 마련하였는가?			
6	대학의 핵심업무 수행을 위한 필수가용자원을 파악하고 있는가?			
7	방역·위생 물품이 충분히 구비되어 있는가?			
8	업무에 필요한 중요 데이터를 백업하고 있는가?			
연락망 구축 및 내·외부 커뮤니케이션				
9	교직원, 협력업체, 재적생 등 연락처 목록을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있는가?			
10	「대학 코로나19 방역관리 안내」 등 정부의 각종 지침에 대해 확인하고 숙지하였는가?			
11	대학 내 감염병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구성원간 의사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는가?			
위기상황 대응				
12	의심확진환자 발생 시 대응책을 마련하고 모든 구성원에게 알렸는가?			
13	방역관리 다중이용 시설 관리 등 대학 내 감염 방지 대책이 있는가?			
14	대규모 결근 등 발생시 실행 가능한 대체 복무계획 등이 마련되어 있는가?			
복구 및 사후조치				
15	핵심기능, 가용할 수 있는 자원 상황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에 따른 복구진행 계획이 수립되었는가?			
16	감염 후 회복된 직원의 복귀 절차 등 인력 정상화 계획이 마련되어 있는가?			

붙임2

대면수업 진행 시 방역점검 체크리스트

구분	주요내용	체크란	비고
공통	1 대학 구성원의 역할 분담을 담은 코로나19 대응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2 대학일상회복지원단(구-코로나19 비상대응기구)을 구성(전환) 운영중인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3 코로나19 관련 생활·예방 수칙을 학생 및 교직원에게 주기적으로 안내하는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4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해 일일 발열체크 등 유증상 여부를 확인하는가? ※ (예시) 대학 자체 제작 앱, 교육부 자가진단앱 활용 여부 또는 발열체크 대장 활용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5 지자체, 보건소, (대학)병원 등 유관기관과 협조 체계를 구축하였는가? ※ (예시) 기관 간 연락체계 구축, 의심환자 발생 시 대응체계 구축 등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6 대학 내 시설에 대해 주기적으로 방역을 실시하는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7 코로나19 질병정보 및 손 씻기, 기침예절 등 감염예방 행동 수칙, 홍보물을 시설 내 주요장소에 부착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8 유증상자 발생 시 조치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가? ※ (예시) 발열자에 대해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시킨 후 타인과 접촉하지 않도록 별도의 공간에 대기하도록 한 후, 상황에 맞게 귀가, 대학보건실 또는 선별진료소를 방문하도록 조치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9 유증상자, 확진자 등 특이사항 발생 시 조치사항은 적절한가? ※ 상황 보고, 확진자 동선 파악, 이용 시설 폐쇄 등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10 각종 행사는 대학 행사 기준을 준수하고 대학 방역관리기관(예시: 일상회복지원단) 등의 승인 후 추진되는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11 대학 내 시설물에 대한 외부인 출입 통제 또는 관리를 하고 있는가? ※ 발열체크를 포함한 출입관리대장 등 비치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12 유증상자 발생 시 자체검사, 기숙사 정기검사, 대면수업 전 선제검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자기검사키트를 충분히 구비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강의실 실험실	13 교수, 조교, 학생이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는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14 마스크 미 착용 시 입실 불가를 안내하는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15 수업 전 발열체크 등을 실시하는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16 발열체크 대장 등을 작성하는가?	<input type="checkbox"/> 예	

구분	주요내용	체크란	비고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17 소독을 실시하는가? ※ 가급적 1일 2회(일과 시작 전/종료 후) 강의실을 소독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18 손 소독제는 비치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19 강의실 및 실험실 등의 청소·환기 상태는 적절한가? ※ 수업 전 창문을 열어 놓고, 수업 중에도 수시로 창문을 개방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20 강의실 방역관리 기준을 지키고 있는가? ※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또는 4m ² 당 1명을 유지하되, 실험·실습실의 경우 4m ² →2m ² 로 조정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21 마이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마이크 덮개를 사용하고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도서관	22 도서관 출입구에서 발열체크 등을 실시하는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23 무인 대출·반납기 등의 운영을 통한 비대면 장서 대출 실시, 장서의 반납 후 소독 실시, 전자책 이용을 권장하는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24 열람실 등은 좌석 간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를 하는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25 도서관 내 청소 및 환기, 소독은 정기적으로 실시하는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동아리실 등	26 동아리실, 학생회관 및 각 건물 내 학생 휴게 공간 등을 개방하는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27 각 건물 내 학생 휴게 공간 이용자에게 방역수칙을 안내하는가? ※ 동아리실 이용 인원, 마스크 착용, 취식 제한 등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28 손 소독제 등은 비치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29 청소 및 환기, 소독은 정기적으로 실시하는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통학(근) 버스	30 운전자 및 탑승자 마스크 착용, 기침 예절 준수 등을 안내하는가? ※ 의심 증상자 탑승하지 않도록 안내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31 차량 내·외부를 정기적으로 소독하는가? ※ 출입문, 손잡이, 의자, 버튼 등 탑승자의 손이 닿는 부분 수시 소독 실시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식당	32 식당 운영 전 소독을 실시하는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33 식당 시설 및 기구는 매일 청소·소독하는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34 손 소독제, 손 세정제는 비치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35 식당 이용 시 학생·교직원 간 접촉을 최소화하고,	<input type="checkbox"/> 예	

구분	주요내용	체크란	비고
36	식사 시 일정 거리를 두고 식사하는가? ※ 한 쪽 방향으로 앉아 식사하기, 한 칸씩 띄어 앉기 등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식당 종사자의 발열 및 호흡기 증상 확인을 통해 유증상자는 귀가 조치하고 코로나19 행동수칙을 안내하는가? ※ 배식 시 위생마스크 및 일회용장갑 등 착용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기숙사 (공통)	기숙사 입소 전 건강상태(발열 및 호흡기 질환 여부 확인, 결핵검진 등)를 확인하는가? ※ 결핵검사 확인서 등 증빙자료 확인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기숙사 입소시 2일 이내 선별진료소 및 지정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음성확인서를 제출하도록 안내하는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기숙사 입소자에 대해 매일 1회 이상 건강상태를 모니터링하는가? ※ 발열·기침 등 증상 여부 확인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코로나19 질병정보 및 손 씻기, 기침예절 등 감염 예방 행동 수칙을 교육하고, 홍보물을 시설 내 주요장소에 부착하였는가? ※ 현장 확인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화장실 개수대 등에 손 세정제(액체비누) 및 손 소독제, 화장지 등을 충분히 비치하였는가? ※ 현장 확인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시설 내 주요 공간의 청소, 소독 및 환기를 하는가? ※ 출입문, 엘리베이터, 문 손잡이, 난간, 다양한 터치 장치, 책상, 탁자, 의자 등은 1일 1회 이상 소독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기숙사 입구에서 발열 검사를 실시하는가? ※ 발열체크기 설치 및 관리요원 배치 여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외부인의 기숙사 출입을 통제하는가? ※ 출입통제시스템 운영 여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기숙사 (식당)	기숙사 내 유증상자 또는 밀접접촉자 발생에 대비한 유희공간(출입구, 세면실, 화장실 등이 분리된 격리 시설)이 확보되었는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교내(기숙사) 식당 운영 전 소독을 실시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교내(기숙사) 식당 시설 및 기구는 매일 청소·소독하는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교내(기숙사) 식당 이용 시 학생·교직원 간 접촉을 최소화하고, 식사 시 일정거리를 두고 식사하는가? ※ 한 쪽 방향으로 앉아 식사하기, 한 칸씩 띄어 앉기 등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49	교내(기숙사) 식당 종사자의 발열 및 호흡기 증상 확인을 통해 유증상자는 귀가 조치하고 코로나19 행동수칙을 안내하는가? ※ 배식 시 위생마스크 및 일회용장갑 등 착용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붙임3 **코로나19 특이사항 발생 보고 서식**

코로나19 특이사항 발생 보고(즉시)

보고일시	기관명(부서명)	보고자			
		성명	사무실	핸드폰	e-mail
'23.00.00, 00:00	0000 학교 ()	000	000)000-000	010-000-0000	

'23.0월.00일 현재, ○○지역 소재 ○○대학교에서 코로나 확진자 00명 발생이 인지되어 보고 드림

※발생 경위 작성 시 유의사항
-본교 기확진자의 추가 확진자 발생 시: 발생경위에 **선행확진자 정보 및 접촉력** 상세 기재
ex) 00월 00일 확진된 본교 확진자 000과 00월 00일 교외 식사/동아리 활동
ex) 00월 00일 확진된 본교 확진자 000과 00월 00일 같은 사무실/연구실 이용

발생 개요

○ **학생 및 교직원 인적사항**

구분	소속	학적 상태	성명	성별	생년	국적	입국일	비자유형
학부생, 대학원생, 교직원	00학과 2학년,	재학, 휴학, 입학 예정, 수료	김00	여	96	한국		
유학생	한국어학당	재학	NGUYEN THI ANH	남	95	베트남	20.08.26	D4

※ 유학생은 국적, 영어 전체성명, 입국일(국내 체류 유학생 포함), 비자유형 등 필수기재

○ **발생현황** : 00명('22.00.00,00시 기준)

- 확진자 상황 : 000소재 '00보건소, 00명원'에서 검사결과 확진
- 학교 출입여부: 22.0월.00일 까지 or 해당 없음 (**있음**이나 **0** 단순 기재 불가)

※ 역학조사 기간에 포함되는 최종등교일 및 기숙사 재실일 기재

- 학교내 동선:
- 밀접 접촉자 현황: 직원(명), 학생(명) or 해당 없음

00명 중 00명 음성 판정, 나머지는 결과대기 중

※ 보건당국에서 밀접 접촉자로 분류한 내역 기재

- 동거가족 현황(0명): 부, 모, 여동생(00대 0학년)

부-, 모-'음성'/여동생-'결과대기 중'

※ 확인 가능 시 기재

□ 발생 경위 ※ 확인 가능한 세부사항 기재

○ 감염 경로 : 00월 00일 00시 '증상발현 or 해외 입국 or 어머니 확진 or 헬스장 확진자 접촉 or 본교 기확진자 접촉'

* 본교 기확진자 정보 및 접촉력 상세 기재

○ 진단 검사 : 00월 00일 00시 000소재 '00보건소, 00병원'에서 검사

○ 양성 판정 : 00월 00일 00시 '양성' 확진

○ 인지 시점 : 00월 00일 00시 '학생과의 연락, 모니터링, 보건소를 통해 학교 측 인지

□ 대학 등의 조치사항

-
-

※ 접촉자 파악, 귀가 조치 후 검사 안내, 학교 폐쇄 및 방역, 자가 격리 권고 등

3. 복구 계획

우리대학 교직원이 확진자와 접촉했거나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에 부서장 및 학과장에 신고하고, 출근 전 ①RAT검사(병원에서 확진진단) 또는 ②PCR검사 시행 후 음성 여부 확인 후 출입 가능.

※ 근거 :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997(2022.02.08.) 「코로나19 확진자 및 접촉자 관리기준 변경 사항 안내」

▣ 방역, 소독 등 환경·위생 관리

- 대학 내 시설물, 통학버스, 기숙사 등 주요 공간 청소, 소독, 환기 강화

- 구성원이 자주 접촉하는 표면(손잡이, 키오스크, 각종 버튼, 수도꼭지 등)은 매일, 출입문이나 엘리베이터, 음수대 등은 수시 소독 실시
- ※ 청소·소독은 1일 1회 이상, 환기는 1일 3회 이상 권고
-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 창문을 상시 개방하여 운영하며, 개방하지 못하는 상황인 경우 주기적으로 문과 창문을 열어 환기 철저
- ※ 에어컨은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필터도 자주 청소·교환 실시
- 대학 내 시설 및 화장실 등에 손 세정제, 비누 등을 충분히 배치
- ※ 엘리베이터 내부, 문 손잡이, 키오스크 근처 등에 손 세정제, 일회용 장갑 등 비치
- 곳곳에 휴지와 뚜껑이 있는 쓰레기통을 비치하여, 기침이나 재채기 시 사용한 휴지를 깨끗하게 버릴 수 있도록 조치
- 학생, 교직원, 통학버스 운전기사, 용역업체 및 입주업체 직원, 방문객 등에 대한 발열, 호흡기 증상 모니터링 철저
- 외부인(방문객)의 건물 출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불가피한 경우 발열, 호흡기 증상 등 건강상태 확인 후 허가(출입 등록대장 작성·관리)
- 발열, 호흡기 증상 등 유증상자 대기를 위한 별도의 공간 마련
- ※ △(실내) 이동 최소화를 위해 가급적 1층에 마련 (실외) 외기에 영향받지 않도록 천막 등 활용
- 보건용 마스크, 체온계 등 방역물품은 「학생 감염병 예방·위기대응 매뉴얼」 비축기준을 참고하여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
- ※ 체온계, 보건용(KF94, N95) 마스크, 의료용 장갑, 손소독제, 살균티슈 등

제7장 학생 황사, 미세먼지 및 폭염대비 계획

1. 개요

- 황사, 미세먼지 및 폭염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통해 학생,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하고 황사, 미세먼지 및 폭염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여 정상적인 대학 운영 도모

2. 현황 및 실태

- 최근 황사, 미세먼지 및 폭염으로인한 피해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음
- 특히 황사와 미세먼지는 농도가 높고 유독성 화합물과 중금속 등이 다량검출되고 있어 호흡기 질환과 혈관계 질환을 유발하는 등 건강위험요소로 부각되고 있음
- 기상청의 황사, 미세먼지 및 폭염발령 상황을 수시 파악하여 단계별 조치계획에 따라 학생수업과 학생보호 대책을 강구하여 황사, 미세먼지 및 폭염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

3. 주요사업(내용)

- 가. 황사, 미세먼지 및 폭염발생 대응 및 사전 교육
 - 황사, 미세먼지 및 폭염발생 시 국민행동요령 등 사전 교육 철저
 - 학생, 교직원에게 발령단계별 조치사항 및 황사, 미세먼지, 폭염 대비 국민행동요령 등을 사전 안내
 - 황사, 미세먼지 및 폭염 발생시 SMS문자 및 대학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황사, 미세먼지 발생 및 폭염발생과 학생에 대한 조치 상황 신속 전달

- 황사, 미세먼지 및 폭염 발생 시 재난의 정도에 따른 행동수칙과 피해예방 방안을 교내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나. 황사, 미세먼지 피해예방 단계별·특보발령단계별 행동요령에 따라 대응

※ 황사 특보기준 강화(07.2) : 황사주의보(500→400 $\mu\text{g}/\text{m}^3$), 황사경보(1,000→800 $\mu\text{g}/\text{m}^3$)

- 특보발령 시 호흡보호구 착용, 손씻기 운동 및 지도 강화
- 외출 시 마스크, 모자 등을 반드시 착용
- 비상연락망 점검 및 연락 체계 유지
- 황사 및 미세먼지 마스크 등의 보호장비를 의료지원팀 및 교내 비치
- 특보 종료 후 학생 및 교직원 건강 상태 점검 및 관리

다. 폭염 피해예방 단계별·특보발령단계별 행동요령에 따라 대응

- 폭염 발생 시 체육활동 등 야외활동 자제 및 평소보다 물을 자주 섭취 하도록 안내
- 건물 별 정수기 비치여부 점검
- 외출 자제 및 실외 활동 금지
- 학교급식 식중독 주의, 예방 재점검
- 비상연락망 점검 및 연락 체계 유지
- 폭염특보 종료 후 환자 파악 및 건강 상태 점검 및 관리

4. 추진일정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추진 일정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황사, 미세먼지 및 폭염예방 교육			■	■	■	■	■		■	■	■	■
황사, 미세먼지 및 폭염예방 홍보	■	■	■	■	■	■	■	■	■	■	■	■

- (경보권역) 전국 17개 시·도(70개 권역*, '18.12월 기준)
- (경보단계) 주의보와 경보로 구분

대기오염경보 단계별 대기오염물질의 농도기준(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7])

대상물질	경보 단계	발령기준	해제기준
미세먼지 (PM-10)	주의보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10 시간당 평균농도가 150 $\mu\text{g}/\text{m}^3$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주의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검토하여 대기자동측정소의 PM-10 시간당 평균농도가 100 $\mu\text{g}/\text{m}^3$ 미만인 때
	경보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10 시간당 평균농도가 300 $\mu\text{g}/\text{m}^3$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경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검토하여 대기자동측정소의 PM-10시간당 평균농도가 150 $\mu\text{g}/\text{m}^3$ 미만인 때는 주의보로 전환
초미세먼지 (PM-2.5)	주의보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2.5 시간당 평균농도가 75 $\mu\text{g}/\text{m}^3$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주의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검토하여 대기자동측정소의 PM-2.5 시간당 평균농도가 35 $\mu\text{g}/\text{m}^3$ 미만인 때
	경보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2.5 시간당 평균농도가 150 $\mu\text{g}/\text{m}^3$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경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검토하여 대기자동측정소의 PM-2.5 시간당 평균농도가 75 $\mu\text{g}/\text{m}^3$ 미만인 때는 주의보로 전환

[비고] 해당 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10 또는 PM-2.5의 권역별 평균 농도가 경보 단계별 발령기준을 초과하면 해당 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6. 관계기관 비상연락망

- 가. 사상구 보건소 : 051-310-4793
- 나. 좋은 삼선병원 : 051-322-0900
- 다. 부산 보훈병원 : 051-601-6073
- 라. 부산 백 병 원 : 051-890-6114

제8장 학교 식중독 사고 대비 계획

1. 개요

가. 학교식당 이용으로 인한 집단 식중독과 세균성 이질 등 수인성 및 식품 매개 전염병의 발생에 대비하여 실정에 맞는 감시체계 및 계획적인 관리를 통하여 집단발병을 미연에 방지하고 발병 시 신속히 치료하고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여 유사한 위생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함.

2. 주요사업(내용)

가. 일반위생관리

- 개인위생 : 6개월 단위로 건강검진, 손세척/소독, 위생복 착용, 소화기계 증상자 조리금지
- 온도 및 시간관리 : 5 ~ 60 $^{\circ}\text{C}$ 위험온도 구간에 식품이 없도록 관리
- 청소 및 정리정돈 : 시설, 설비, 도구 청소, 조리실, 탈의실, 창고, 사무실 정리

나. 검 수

- 배송차량 온도 기록지 확인, 차량내부 청결유지
- 식품, 비식품 분리/구분 배송
- 냉동 -18 $^{\circ}\text{C}$ 이하, 냉장 0 ~ 10 $^{\circ}\text{C}$
- 식자재는 허가받은 업체로부터 표시사항과 생산지가 명확한 식품 구입
- 식품의 온도, 선도, 품질, 표시사항, 유통기한 등 확인
- 부적합품 또는 폐기품은 표시하여 별도 표시

다. 전처리

- 절단, 썰기 - 용도별 기자재 구분 사용, 맨손 금지
- 세척, 소독 - 애벌세척시 이물 선별 철저
- 소독액 제조 및 침지 소독 - 농도, 시간 준수
- 행균 - 식품첨가물로 허가받은 소독제 사용
- 해동
 - 냉장해동 - 5℃이하 냉장고에서 72시간 이내
 - 유수해동 - 흐르는 찬물에서 2시간 이내
 - 해동시 다른 식재 등에 오염되지 않도록 관리
 - 해동 후 재냉동 금지

라. 조 리

- 가열 - 중심온도 74℃이상(중심온도 정확히 확인)
- 비가열(무치기, 혼합) - 소독된 장갑 사용, 조리용기 및 조리도구 소독
- 냉각 기준 준수(냉방기기, 오랜 상온방치 냉각금지)
 - ※ 60℃이상 -----> 21℃이하 -----> 5℃이하
 - (2시간이내) (4시간이내)

마. 검식 및 보존식

- 검식
 - 조리 완료전 검식
 - 검식 전용 용기 및 도구 사용
 - 검식 음식 폐기
- 보존식
 - 조리된 식단을 매회 1인 분량 보관
 - -18℃이하에서 72시간 이상 보관
 - 보존식 용기는 건조, 소독된 것 사용

바. 보관 및 배식

- 적온보관 - 찬 음식(5℃이하), 따뜻한 음식(60℃이상)
- 배식
 - 적온보관이 안되는 경우 2~3시간 이내 배식
 - 상온보관시 3시간 이내 배식 완료
 - 새음식과 배식중이던 음식을 섞지 않음

사. 세척 및 소독

- 세척 - 눈에 보이는 오염물질과 식품잔류물 제거
- 소독 -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을 화학물질로 사멸
-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로 인정된 제품 사용
- 세척 후 소독(소독효과를 높임) - 이물 제거 - 세제세척 - 소독
- 식기 세척/소독은 기구등의 살균 소독제로 인정된 제품 사용
- 식기소독 방법
 - 식기세척기 최종 행균 온도 82℃ 이상
 - 식기건조기내 식기 표면 온도 71℃ 이상
 - 염소 소독(수 세척시 필수)

3. 집단 급식 및 식중독 발생시 대응

- 가. 동일증세로 2인 이상 집단 환자 발생 또는 의심시에 보건소에 즉시 신고
- 나. 신고 후 급식 현장을 그대로 보존하고, 설사환자를 파악, 현장 조사, 가검물 조사
- 다. 보존식 수거 등 보건소 역학조사에 적극 참여
- 라. 식단 조리과정 설명을 정확히 기록
- 마. 조리종사자의 건강상태 파악
- 바. 최근 3일간의 식단표와 거래처 파악 등

사. 보건소의 역학조사가 이루어진 후 시설과 기구 등에 대한 살균, 소독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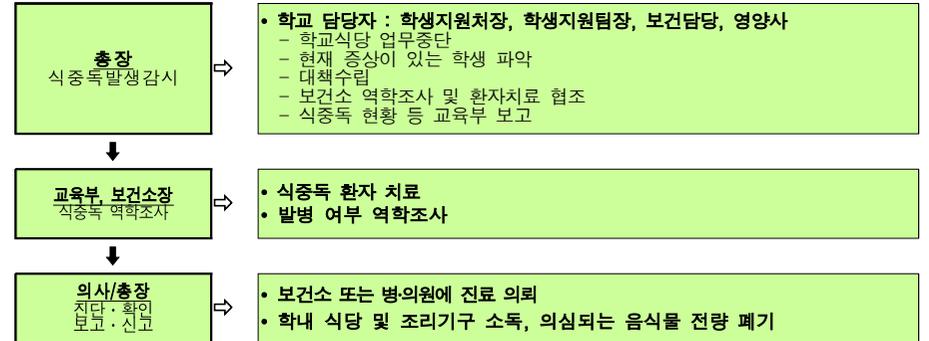
아. 의심되는 원인에 대한 재발 방지조치가 되기 전에는 가급적 학교식당 운영을 중지

[식중독 발병의 주요 원인균]

원인균	증상및발병시기	오염원
노로바이러스	-오심, 구토, 설사, 복통 -24~48시간	-사람의 분변에 오염된 물이나 식품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에 의한 2차 감염 -겨울철에 많이 발생
황색포도상구균	-구토, 복통, 설사, 오심 -1~5시간	-사람 또는 동물의 피부, 점막에 널리 분포 -화농성 질환자가 취급·준비한 음식물
바실러스	-구토형 : 황색포도상구균 식중독과 유사 -설사형 : 클로스트리디움 식중독과 유사	-자연계에 널리 분포하여 토양, 곡류, 채소류에 존재 -구토형 : 볶음밥, 파스타류 등 -설사형 : 식육, 스프 등
살모넬라	-복통, 설사, 구토, 발열 -8~48시간	-사람·가축 분변, 곤충 등에 널리 분포 -계란, 식육류와 그 가공품 -분변에 직·간접적으로 오염된 식품
병원성대장균 O157	-설사, 복통, 발열, 구토 -12~72시간	-환자나 동물의 분변에 직·간접적으로 오염된 식품 -오염된 칼도마 등에 의해 다져진 음식물
장염비브리오	-복통, 설사, 발열, 구토 -평균 12시간	-여름철 연안에서 채취한 어패류·생선회 등 -오염된 어패류를 취급한 칼도마 등 기구류
클로스트리디움	-설사, 복통, 통상적으로 가벼운 증상 후 회복됨. -8~12시간	-동물 분변, 토양 등에 존재 -대형 용기에서 조리된 스프, 국, 카레 등을 방치할 경우

학교 식중독 발생시 대응체계

□ 평상시 학교 식중독 대응체계



□ 학교식중독 발생확산시 단계별 조치사항

구분	관 심 (Blue)	주 의 (Yellow)
판단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중독지수 : 10~34 • 기온이 상승하고 습도가 높은 기후의 변화 • 수학여행 및 체험학습이 잦은 봄·가을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중독지수 : 35~50 • 해안지방 어패류에서 비브리오균 검출빈도 • 일부 집단급식소에서 식중독사고 발생 • 일부학교에서 복통 및 설사환자 발생
조치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중독 정보수집 및 전파(교육부/교육청) ▶ 급식관리 철저, 식중독 예방교육 실시(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계기관 협조체계 가동(교육부/교육청) ▶ 복통·설사환자 모니터링 강화(학교)
구분	경 계 (Orange)	심 각 (Red)
판단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중독지수 : 51~85 • 집단급식소에서 산발적 식중독 발생 • 일부지역에서 복통·설사환자 100명 이상 발생 • 10개 학교 이상에서 동시에 식중독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중독지수 : 85이상 • 집단급식소에서 100명 이상 식중독 발생 • 단위학교 학생의 30% 이상 설사환자 발생 • 30개 학교 이상에서 동시에 식중독 발생
조치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급식사고 대책본부 운영(교육부/교육청) ▶ 체험학습 억제, 급식중단, 대책반 운영(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급식사고 대책본부 비상근무(교육부/교육청) ▶ 급식 및 체험학습 중단, 대책반 비상근무(학교)

4. 추진일정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추진 일정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위생교육												
식당 점검												
의료지원팀 운영												
식중독 발생시 대책위원회 운영												
식당 모니터링												
홈페이지 홍보												

5. 관계기관 비상연락망

- 가. 사상구 보건소 : 051-310-4793
- 나. 좋은 삼선병원 : 051-322-0900
- 다. 부산 보훈병원 : 051-601-6073
- 라. 부산 백 병 원 : 051-890-6114

제9장 학생 인권침해 및 성폭력 예방·근절 계획

I. 학교폭력

1. 개요

가. 학생의 인권과 생명을 존중하고, 폭력으로부터의 공포와 괴로움을 제거함으로써, 안전하고 편안한 분위기의 즐거운 학교 풍토 조성

2. 주요사업(내용)

- 가. 대학교 내 학교폭력 상담소(학생상담센터 내) 설치
- 나. 대학교 홈페이지 학교폭력 고충상담소 홈페이지 설치
- 다. 학교폭력 예방 및 학교폭력사건 처리를 위해 학교폭력예방위원회설치
- 라. 대학교 학교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제정
- 마. 매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 실시 : 신입생 OT, 특강, 온라인 교육 등
- 바. 학교폭력 고충상담소 홈페이지 교육자료 게재 등

3. 학교폭력 사건 대응체계

- 가. 학교폭력 상담소(홈페이지, 학생지원처 등)를 통해 신고를 받고 즉시 상담에 응함
- 나. 제3자의 신고도 가능하며 신고인은 피해자와 동등한 보호를 받는다.

- 다. 상담소는 학교폭력 피해자의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한다.
- 라. 상담소장은 신고된 학교폭력 사건을 조사하여 이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마. 위원장은 보고된 사건의 처리를 위해 위원회를 소집한다.
- 바. 위원회에서 가해자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심의·의결한다.
- 사. 위원회는 징계가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 해당 관련부서에 징계를 요구하거나 발의한다.
- 아. 위원회의 조치사항
 - 가해자의 공개 사과
 - 가해자의 재교육프로그램 이수 명령
 - 가해자에 대하여 관계법 및 학칙에 의한 징계 요구
 - 피해자에게 민·형사적 구제수단에 관한 정보제공
 - 가해자가 재범이거나 위원회의 조치를 불이행할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유형, 무형의 보복을 가할 경우에 가중한 징계의 요구나 발의

4. 위원회 구성

- 위원회는 학생지원처장, 학생지원팀장, 총장이 추천하는 교수 2인, 학생대표 2인으로 구성하되 학생지원처장이 위원장이 된다.

5. 사안처리시 유의사항

- ▶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면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를 끝까지 견지한다.
- ▶ 학생과 학부모의 상황과 심정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통해 신뢰를 형성하고, 불필요한 분쟁이 추가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 적극적인 자세로 학교폭력 사안처리를 위해 노력하고, 축소·은폐하거나 성급하게 화해를 중용하지 않도록 한다.
- ▶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사안은 반드시 자치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 ▶ 전담기구의 조사 및 자치위원회 조치 결정 시 관련학생 및 보호자에게 반드시 의견진술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출석에 의한 의견진술이 어려운 경우 서면진술 가능)
- ▶ 사안조사 등 관련자료는 비공개로 원칙으로 한다.
 - ※ 단, 관련학생 및 학부모가 자치위원회 회의록 공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학교폭력 예방법 제21조에 의한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해야 함.
 - ※ 회의록 작성 시 녹취를 한 후 회의내용을 상세하게 기록하여 추후 민원 발생 시 증빙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 ▶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재심 성격의 자치위원회는 개최하지 않는다.
- ▶ 가해자가 학생이 아닌 학교폭력사안의 경우 필요시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실시
- ▶ 자치위원회 개최 시, 해당 사안을 중심으로 사안을 다루어야 한다.(과거의 학생의 교내 생활전반을 포함하여 필요이상의 가중조치를 부여하여 민원 발생)
- ▶ 성범죄 관련 사안을 인지한 경우 모든 경우에 예외 없이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한다.

6. 추진일정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추진 일정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학교폭력 예방교육			■	■	■				■	■	■	
상담실 운영	■	■	■	■	■	■	■	■	■	■	■	■
사건처리 운영	■	■	■	■	■	■	■	■	■	■	■	■
위원회 운영	■	■	■	■	■	■	■	■	■	■	■	■
학교폭력 예방 홍보	■	■	■	■	■	■	■	■	■	■	■	■

참고

학교폭력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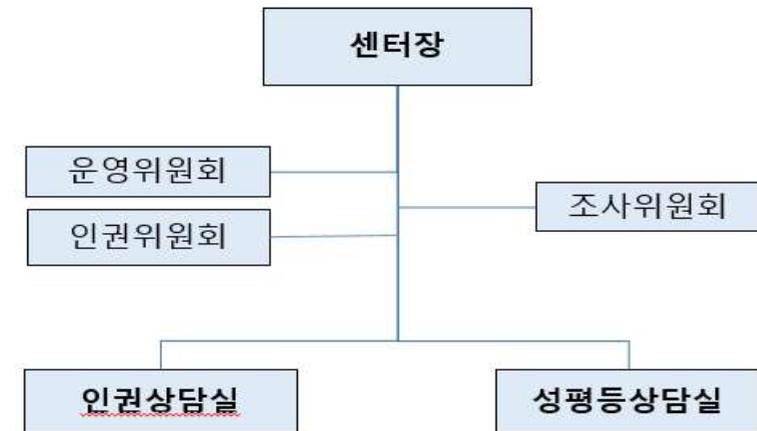
유형	학교폭력예방법 관련	예시상황
신체 폭력	·상해 ·폭행 ·감금 ·약취·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체를 손, 발로 때리는 등 고통을 가하는 행위(상해, 폭행) 일정한 장소에서 쉽게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감금) 강제(폭행, 협박)로 일정한 장소로 데리고 가는 행위(약취) 상대방을 속이거나 유혹해서 일정한 장소로 데리고 가는 행위(유인) -장난을 빙자해서 꼬집기, 때리기, 힘껏 밀치는 행동 등도 상대방이 폭력행위로 인식한다면 이는 학교폭력에 해당
언어 폭력	·명예훼손 ·모욕 ·협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러 사람 앞에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구체적인 말(성격, 능력, 배경 등)을 하거나 그런 내용의 글을 인터넷, SNS 등으로 퍼뜨리는 행위(명예훼손) -내용이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범죄이고, 허위인 경우에는 형법상 가중 처벌 여러 사람 앞에서 모욕적인 용어(생김새에 대한 놀림, 병신, 바보 등 상대방을 비하하는 내용)를 지속적으로 말하거나 그런 내용의 글을 인터넷, SNS등으로 퍼뜨리는 행위(모욕) 신체 등에 해를 끼칠 듯한 언행(죽을래 등)과 문자메시지 등으로 겁을 주는 행위(협박)
금품 갈취	·공갈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돌려 줄 생각이 없으면서 돈을 요구하는 행위 옷, 문구류 등을 빌린다며 되돌려주지 않는 행위 일부러 물품을 망가뜨리는 행위 돈을 걷어오라고 하는 행위 등
강요	·강제적심부름 ·강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속칭 빵 셔틀, 와이파이 셔틀, 과제 대행, 게임 대행, 심부름 강요 등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하는 행위(강제적 심부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해야 할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하는 행위(강요) -폭행을 할 마음이 없는 학생에게 상대방을 폭행하지 않으면 자신에게 맞다고 협박하는 경우
따돌림	·따돌림	<ul style="list-style-type: none">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따돌림) 싫어하는 말로 바보취급 등 놀리기, 빈정거림, 면박주기, 겁주는 행동, 골탕 먹이기, 비웃기, 다른 학생들과 어울리지 못하도록 막기 등
성 폭력	·강간 ·강제추행 ·성희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폭행·협박등 강제력을 동원한 성행위(강간) 폭행·협박으로 구강, 항문 등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이나 도구 등을 넣는 행위(유사강간) 폭행, 협박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신체적 접촉 등을 하는 행위(강제 추행) 성적인 말과 행동을 함으로써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 수치감을 느끼도록 하는 행위(성희롱) 등
사이버 폭력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해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 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사이버 따돌림) 특정인에 대한 허위 글이나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실을 인터넷, SNS, 카카오톡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 공개하는 행위 정보통신망을 통해 성적 수치심을 주거나, 위협하는 내용, 조롱하는 글, 그림, 동영상 등을 유포하는 행위 휴대폰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음향, 영상 등을 반복적으로 보내는 행위

II. 성폭력 예방 대책

1. 개요

- 가. 2022.3.24.부터 대학 인권센터 설치가 의무화(「고등교육법」 개정, 2021.3.23.) 됨에 따라 설치·운영 기준에 맞춰 신라대학교 내 인권센터 설립
- 나. 인권센터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보장되도록 설치·운영함으로써 학교 구성원의 실질적인 인권 보호 및 권익 향상 도모
- 다. 대학 구성원의 만족도 제고, 상호 배려하고 존중하는 문화 조성, 성희롱·성폭력 없는 성평등한 대학 문화 속에서 공동체 구현

2. 조직도



3. 사업내용

구분	사업내용	비고	
상담	인권상담 및 사건처리 성희롱·성폭력 상담 및 사건 처리	상시	
조사	인권·성평등 의식 실태조사	연 1회	
교육	인권교육	온·오프라인	기획·상시
	폭력예방교육	온·오프라인	
	인권·성평등 교육	온·오프라인	
	피해자 회복프로그램, 가해자 2차가해 방지프로그램		사건 시
홍보	인권·성인식 개선 캠페인	연 1~2회	

4. 위원회 구성

분류	인원	담당업무
운영위원회	시행령 반영 구성	인권센터가 독립, 자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하여 주요 업무를 심의, 의결-계획, 인사, 결산 등
인권위원회	시행령 반영 구성	인권침해 사건의 심의, 의결
조사위원회	시행령 반영 구성	인권침해 사건의 중요성에 따라 구성, 사건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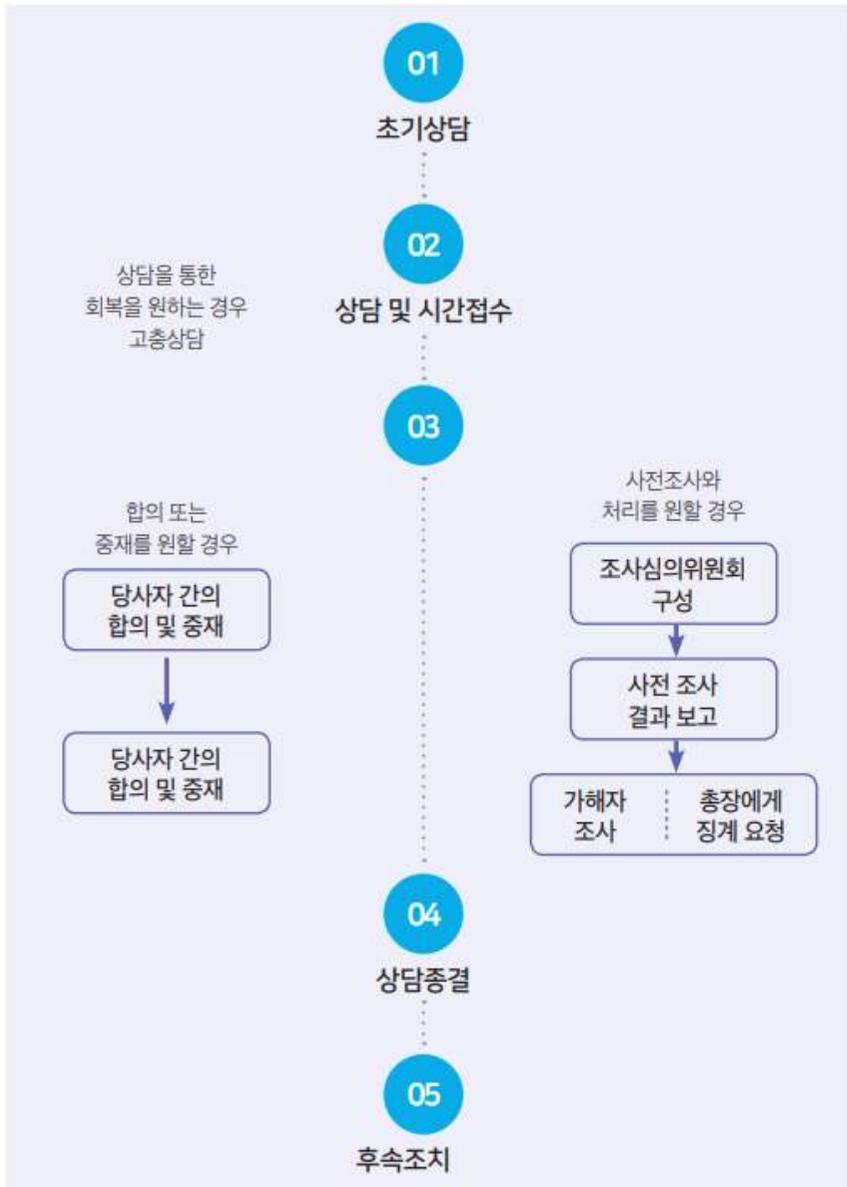
6. 추진일정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추진 일정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인권침해 예방교육				■						■		
상담실 운영	■											
사건처리 운영	■											
위원회 운영	■											
인권·성폭력 예방 홍보					■					■		

7. 위기 대응 체계



<관련 절차>



구분	기관명	이용시간	위치	연락처(홈페이지)
신고	온라인	24시간		http://counsel.silla.ac.kr/counsel/index.php?pCode=adviceCy 
	해당과	학기중 평일 9시 ~ 17시 방학중 평일 10시 ~ 15시		해당 학부 및 단과대학 교학행정실 홈페이지 접속
상담	학생 상담센터	학기중 평일 9시 ~ 17시 방학중 평일 10시 ~ 15시	회랑관 414호	☎ 999-6287 email : life_r2@silla.ac.kr

< 교내기관 접수 방법 >

기관명	지원프로그램	주소	연락처(홈페이지)
부산해바라기센터 (통합형: 심리평가, 치료)	위기상담, 의료, 법률, 수사지원서비스 (365일 24시간)	서구 구덕로179(부산대학병원 핵의학연구동 3층)	http://www.pnuh.or.kr/sunflower/ 244-1375
동부해바라기센터 (위기형)		연제구 월드컵대로369 (부산의료원 지하 1층)	http://www.bsonestop.or.kr/ 501-9117
대한법률구조공단 부산지부 (아래 외 지역)	무료 또는 소액 실비로 변호사에 의한 소송대리	연제구 법원로 20 (동주빌딩 2,3층)	http://www.klac.or.kr/ 505-1648
대한법률구조공단 부산동부출장소 (남구, 기장군, 해운대구, 수영구)		해운대구 재반로 176 (미진빌딩 4층)	http://www.klac.or.kr/ 781-0710
부산 사상경찰서	일반 성폭력 사건 및 피해자 보호지원	사상구 학감대로 264	www.bsppolice.go.kr/sasang/ 1566-01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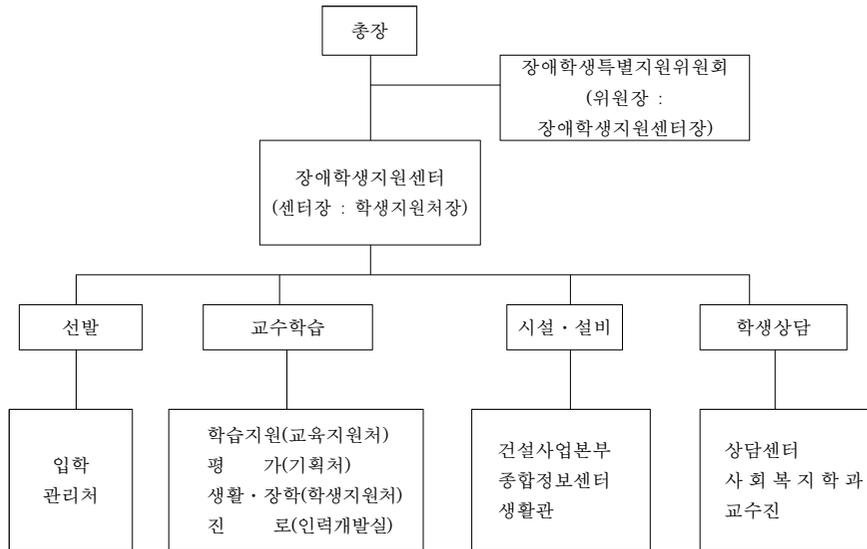
< 교외기관 접수 방법 >

제10장 장애인 안전 및 인권제고 계획

1. 개요

- 장애학생의 안전한 통학 및 이동을 위하여 학교 내 통학로 및 장애인 주차구역의 불법 주·정차 단속 필요
- 전체 재학생 수에 비해 소수인 장애학생들의 원활한 대학생활 및 인권제고
- 장애이해 및 인식개선 교육을 통해 비장애학생, 직원 및 교·강사 등에게 장애에 대한 잘못된 개념이나 이해를 바로 잡아 주고 편견을 없애기 위함

2. 조직도 및 실무위원 구성현황



장애인학생특별지원위원회	
위원장	1명
위원	6명
계	7명

3. 현황 및 실태

가. 장애인학생 특별지원위원회 회의 실시

- 기간 : 연 2회
- 주요내용
 - 장애인학생 지원을 위한 개선 방안 논의
 - 장애인학생 학습권 보장 및 개선
 - 장애인 시설 개선
 - 장애인학생 인권을 위한 제도 개선

나. 장애인학생 관련 사업 실시

- 교수-학습 기자재 및 보조공학기기 대여
- 장애인학생 학업 결손 방지를 위한 학습도우미 제도 실시
- 장애인학생 선수강신청제 실시
- 장애인학생 학점등록제 실시
- 시각장애인학생 대체자료 제작 자원봉사 개최
- 장애인학생 및 학부모 개별 상담 및 상담 전문가 연계
- 장애인학생 간담회 실시(연 2회)

다. 장애인대학생 도우미지원(국가근로 장애인학생봉사유형)

- 장애인대학생 도우미 활동비 지급
 - ※ 국고보조금 80%, 교비대응금 20%

- 매학기 장애대학생 도우미 선발
- 장애학생 도우미 사전교육
 - 장애 인식 개선 및 장애이해교육
 - 장애유형에 따른 장애학생 도우미 소양 교육
 -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 사업 설명

라. 장애인의 날 행사 개최

- 기간 : 장애인의 날(4/20) 전후 3~5일 간
- 대상 : 전 교직원 및 비장애학생
- 협력 : 장애학생 동아리 동그라미
- 주요내용
 - 비장애인에게 장애에 대한 잘못된 개념이나 이해를 바로 잡아 주고 편견을 없애기 위함
 - 장애학생 인권 제고를 위함
 - 장애학생과 함께 하는 캠퍼스 분위기 조성을 위함
 - 장애유형별(시각, 청각, 지체 등) 체험 실시

마. 장애인식개선 캠페인 개최

- 기간 : 연 1회
- 대상 : 전 교직원 및 비장애학생
- 협력 : 사상구장애인복지관
- 주요내용
 - 비장애학생의 장애인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장애에 대한 인식 개선을 통해 편견을 없앨 수 있도록 하기 위함

바. 장애인 주차구역 주·정차 실시간 단속 운영

- 기간 : '23년 연중
- 운영내용
 - 장애학생지원센터와 장애학생 동아리 동그라미가 협력하여 교내 통학로 및 장애인 주차구역에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실시간 단속 및 경고딱지 부착
 - 대상 불문, 장애인 주차구역에 불법 주·정차 차량 발견 시

사. 장애학생 개별 상담 진행

- 기간 : '23년 연중
- 대상 : 장애학생 및 도우미학생, 학부모
- 운영내용
 - 장애학생 및 도우미학생의 대학 생활 중 불편 사항이나 학습, 개인 고민 등을 상담
 - 심화상담의 경우 학생상담센터와 연계하여 진행

4. 2023년 추진계획 및 일정

사업 내용	추진 일정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장애학생 학점등록제 실시	▶	▶					▶	▶				
장애학생 선 수강신청제 실시	▶	▶					▶	▶				
특수교육대상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										
장애학생 도우미 사전교육			▶						▶			
시각장애학생 대체자료 제작 봉사활동			▶						▶			
장애인의 날 행사 개최				▶								
장애인식개선 캠페인 개최										▶		
장애학생 간담회 개최				▶						▶		
장애인 주차구역 차량 단속	▶	▶	▶	▶	▶	▶	▶	▶	▶	▶	▶	▶
개별 상담 진행	▶	▶	▶	▶	▶	▶	▶	▶	▶	▶	▶	▶
장애학생 도우미 사업 실시	▶	▶	▶	▶	▶	▶	▶	▶	▶	▶	▶	▶
2023 장애대학생 교육복지 지원실태평가			▶	▶	▶	▶	▶	▶	▶	▶	▶	▶

제11장 학생 교외활동 안전교육

1. 개요

- 가. 대학 및 학생회 등에서 운영하는 각종 행사 시 안전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준수사항 마련 및 안전사고 대비 체제 구축을 통한 신속한 대처 능력 제고
- 나. 변화하는 재난, 안전 환경 대응 능력제고 및 안전문화 확산

2. 주요사업(내용)

- 가. 안전교육 및 사전 점검 강화
 - 1) 교외활동 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행사 전 안전사고예방 체크 리스트(숙박시설 점검, 교통수단 점검, 보험가입, 행사전 답사 등) 및 안전수칙 준수 협약서 작성 의무화
 - 2) 행사장소의 소방시설 및 대피로 등 안전사고 대비 정보를 참가자 전체에게 제공 하도록 교육
 - 3) 교외행사 시 보험가입 의무화
 - 4) 사고 발생 시 보고체계 안내
- 나. 교육부 대학생 집단연수 운영 안전 확보 매뉴얼을 이용한 사전 교육 강화

3. 안전사고 발생 시 대응체계

- 가. 응급처치와 병원 후송을 위해 경찰서·소방서 등에 연락
- 나. 학부모 연락 및 해당학과, 총장 연락
- 다. 사고처리
- 라. 후속조치(사고원인 파악 및 역학조사)
- 마. 해당 지자체와 교육부 등에 피해상황 통보

바. 자가진단(자가진단을 통해 추후 유사사고 발생 방지)

4. 추진일정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추진 일정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및 예비대학 안전교육	■	■										
학과 교외행사 관련 안전교육			■						■			
학생자치기구 교외행사 관련 안전교육 (농촌봉사활동, 수련회 등)		■				■	■	■				
안전사고 발생 시 대책위원회 운영	■	■	■	■	■	■	■	■	■	■	■	■



5. 관계기관 비상연락망

- 가. 경찰서 : 112
- 나. 소방서 : 119
- 다. 교육부 : 044) 203-6118

1 재난 상황실 운영

□ 재난 단계별 운영 계획

구 분	세 부 내 용	비 고
1단계 : (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무시간 중 : 주관부서 책임으로 상황 모니터링 • 근무시간 외(17:00 ~ 22: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관부서 직원 각 1명 교대 근무 • 주요 대처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상연락망 점검 등 재난대책근무 태세 준비 및 조치 - 주요 시설물 순찰 점검 강화 등 	
2단계 : (경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부서 팀장 및 부서장 비상근무체제 돌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무시간 중 : 담당자 비상근무 체제 돌입 - 근무시간 외(17 : 00 ~ 24 : 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유형별 담당부서 직원 1명(교대 근무) • 주요 대처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약 및 위험요소에 대한 대응조치 (홍수·태풍 취약지역, 학생·교직원 긴급대피 조치 및 수용 조치) - 군부대, 경찰서, 소방서 등 유관기관 협조 요청 - 재해 상황의 신속한 파악 및 대처, 보고 조치 	
3단계 : (심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 재난사고 수습본부 구성·운영 	

2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관리현황 (2021. 12.)

□ 실무 매뉴얼 현황

구 분	내 용	담당부서	비 고
풍수해 위기대응 매뉴얼	태풍, 호우, 대설	시설관리팀	
황사·폭염 대응 매뉴얼	황사·폭염	학생지원팀	
화재, 정전 대응 매뉴얼	화재, 폭발, 정전	시설관리팀	
원자력 안전 위기대응 매뉴얼	방사능 방호·방제	시설관리팀	
전염병 위기대응 매뉴얼	법정 전염병	학생지원팀 (의료지원실)	
식중독 위기대응 매뉴얼	식중독	학생지원팀	식당(외주)
학교폭력(성폭력) 대응 매뉴얼	성희롱, 성폭력, 범죄행위	학생지원팀 학생상담센터 성희롱·성폭력상담실	
교육시설물 안전관리 계획	교내 시설물 전체	시설관리팀	
연구실 안전 매뉴얼	연구실 안전환경	시설관리팀	